

# 고 시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6-46호

##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사업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예정인 강서구 화곡동 1033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등에 따른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4월 1일

강 서 구 청 장

### 1. 행위제한 내용

#### 가. 대상지

| 위치                | 면적(㎡)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강서구 화곡동 1033번지 일대 | 93,458.1 ㎡ |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<br>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|

나. 제한사유: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(정비예정구역)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전 비 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함

#### 다. 제한행위

##### 1) 건축물의 건축

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
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

## 2) 토지분할

-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
-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

라. 제한기간 :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

### 마. 예외사항

-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·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
-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및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

2. 관계도서: 붙임 참조 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### 붙임 행위제한 지형도면

